

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220531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5290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220531 판결

전문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주식회사 경포

변론 종결 2016. 12. 21.

판결 선고 2017. 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2. 인천국제공항 위생소독용역(기간: 2016. 4. 1.부터 3년간, 추정금액: 3,821,036,204원)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안내문서로 과업내용서 등을 배포하였다.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응하여 2016. 2. 26.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낙찰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각서하였다.

피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입찰금액으로 1,553,268,000원을 투찰함으로써 2016. 3. 1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낙찰가에 따른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체결 불이행을 이유로 2016. 4. 12.까지 입찰보증금 77,663,400원(1,553,268,000원×5%)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7,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낙찰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정한 입찰보증금은 피고가 낙찰에 따른 계약 체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가깝다고 본다(원고는 일종의 위약벌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할 사정은 엇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서에 따른 입찰보증금 77,6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허위내용의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으로 인하여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함으로써 예약이 무효 또는 부존재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상대방에게 표시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는 예약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거로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과업내용서만을 취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낙찰 이후 위 과업내용서상의 수치가 기존 용역업체(주)세스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종전에 수행한 작업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 사무실 사용이 가능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인력 고용승계와 장비 인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투입인원 증가 및 차량 유지비용과 연차수당 부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가의 증액을 요청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타산성 등과 결부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지적하는 과업내용서(제19조 제3항 및 제5항 등)의 문언을 마치 원고가 입찰 참여자들에게 차량유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공항 내 사무실 사용 승낙이나 소외 회사로부터의 인력·장비 승계를 확약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기존 운영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원가산출내역서(을1호증)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낙찰 통보 후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의 청약 의사표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원가산출내역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투입인원 수치(제4조) 등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준별되는 업무수행능력이나 생산성, 국제공항 용역계약 유지에 관한 동기와 목적의 차이,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에 관한 각자의 재량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소외 회사가 일정한 목표 하에 장기간 수행해왔던 업무량을 피고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계산에서 연유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새길 것은 아니다.

④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입찰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장 여건이나 타산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예컨대, 아래 재입찰과정에서 실시된 현장설명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경쟁입찰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후 비로소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에 임하여 투찰금액과 운영비용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면, 그와 같이 착오한 데에 피고의 조사 소홀이나 부주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게다가, 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A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재입찰과정에서 (주)명문코리아라는 업체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을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위 업체는 현재까지 그 낙찰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응찰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원석